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가단103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쿼어

담당변호사 이현식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덕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2. 5.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3. 접수 제15527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누나이다. 피고와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7.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자녀 F, 피고, C, G이 있다.

나. 원고는 2013. 5. 23.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C는 원고에게 2013. 8. 24.부터 2013. 10. 23.까지 연 5.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23.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C가 위 대여금 및 위 2013. 8. 24.부터 2013. 10. 23.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H 작성 2013년 제1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C를 상대로 202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54757호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2023. 12.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3. 12. 2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538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1837호)에 따라 C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 5,326,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와 C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7.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9.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3. 접수 제15527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망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 2/11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일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담하는 각 채무를 포함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0. 7. 13.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의 가액 499,800,000원, 건물의 가액 5,696,000원으로 합계 505,496,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1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은 C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C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사해의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C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이 C가 2013. 5. 23. J 주식회사(이하 'J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J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C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생전증여에 해당하는바 C는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생전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사해의사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또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가 2013. 5. 23. J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J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위와 같이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망인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적 담보에도 불구하고 C는 여전히 위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해 C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거나 소극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상속재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J은행에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는바 결국 C의 대출금 채무가 면책적으로 피고에게 인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C의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남아있다), ③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정을 들어 C가 망인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생전증여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일부 채무변제는 망인의 사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와 같은 생전증여로 평가할 수는 없고, 더구나 위 일부 채무변제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④ 그 밖에 망인이 직접 C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C가 망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등을 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사해의사에 대해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피고가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협의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아 오히려 피고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대출금 채무의 존재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일부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C에 대한 생전증여로서 장차 상속인이 될 C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었다거나 그 밖에 C가 망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금원 등이 있어 C가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생전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C의 사해의사에 대해서 선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3. 접수 제15527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성욱

별지